

중소기업의 더 밝은 내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경남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상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

2020. 7. 24(금)



KBIZ 중소기업중앙회

목 차

◇ 현장건의

1. 실크 원단 제직 준비공정 공동화사업 지원 1
2. 영세 공예 소상공인 판로 확대 2
3. LPG 판매업계 생존 및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3
4.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업체 자금 지원 5
5. 「中企협동조합 활성화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6
6.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8
7. 모래 사용 제한 해제 건의 10
8. (舊)수협부지 내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지원 11
9. 협동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 적극 활용 12
10. 제조 물품 공동계약 적극 실시 14

1

실크원단 제직 준비공정 관련 공동화사업 지원

[건의 :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백홍규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진주시는 세계 5대 실크원단 생산지로서 국내 실크원단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으며,
 - 진주시의 특화산업인 진주실크 및 한국 실크산업 발전을 위해 경남 직물진주실크조합에서도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
- 동 조합에서는 조합원사의 정경 및 연사 준비공정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조합원사에 공급해오고 있음
 - 조합에서 원사를 공동구매하여 고품질 원사를 조합원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경과 연사 공정부분을 공동 수행하여 조합원사에 공급함으로써 원가절감 효과 및 협동화사업 기능 최대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또한, 동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조합원사간 가격변동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 용이한 생산계획 수립, 개발비용 절감 및 샘플 생산공정 지원 등이 가능함
 - 즉, 조합의 공동화사업을 통해 생산원가 5% 절감, 조합원사의 품질개발 비용 절감 등에 따른 고품질 실크원단 생산 유도 및 조합원사 공동 연구개발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건의사항

- 중소기업의 공동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요청
 - 경남직물진주실크조합에서는 실크원단 제직 준비공정 공동화사업을 위해 연간사업비 34억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전체 사업비의 8% (2.7억원)에 해당되는 품질개발 및 샘플생산 비용에 대한 경상남도의 지원 요망

[건의 : 경남공예협동조합 허일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해 전통공예문화 부문이 매우 침체된 상황이어서 육성 및 판로확대 지원이 필요한 상황
 - 경남 공예인들은 전통공예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판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짐
- 경상남도에서 공예문화 부문에 대해 지원하고 있지만 최근 판매가 더욱 위축된 공예문화부문에 대한 판로확대 지원이 절실함
 - 소비자들이 공예품 판매장 방문을 자제하고 있어 공예품 판매가 실질적으로 어려움
 -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공예문화 부문 지원에 나서고, 판로가 민간에서도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공예인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져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작품 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공예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 건의사항

- 경상남도 등 공공기관에서 기념품, 답례품 및 사은품으로 도내 공예인의 작품을 적극 구매 요망
- 공예품 전시판매장 확대 및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필요
 - 공공기관 로비에 공예품 전시홍보를 위한 상시부스 설치 추진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LPG 판매업계 생존 및 활성화 지원대책 마련

[건의 : 경남가스판매업협동조합 구자열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19년말 기준, 경남지역의 LPG 판매업소는 670개소임

- 지역별 현황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창원 성산구	1	양산시	32	의령군	8	고성군	20	거창군	15
창원 의창구	29	밀양시	37	진주시	64	하동군	21	합천군	21
창원 진해구	23	거제시	40	사천시	27	남해군	14		
창원 마산합포구	33	김해시	130	통영시	32	산청군	14		
창원 마산회원구	22	함안군	54	창녕군	25	함양군	14		

○ 정부의 지속적인 도시가스 확대·보급 정책과 LPG 군단위 및 마을단위 배관망사업으로 인해 LPG 판매업소의 경영 악화와 영세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사실상 LPG 판매업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음

○ 이에 따라 LPG 판매업 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LPG 판매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는 LPG는 무조건 위험한 물질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국민들의 삶의 다양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건의사항

○ 생계형적합업종인 LPG 판매업 소상공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손실, 전업 및 폐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영업손실 지원금 / 희망폐업 보상제도(전업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금)

* 예) 연안어선 감척 보상제도, 택시 감차 보상제도, 한우 축산 희망 폐업 유도 등

○ LPG 용기 공영제 도입 필요

- 에너지 사용 환경에 따른 국민차별 해소 및 에너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정부가 LPG 용기를 구매하여 판매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사업자는 사용가구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의 가격경쟁력 제고 (관리비용 약 15% 절감) 가능
- LPG 판매사업자의 경영부담 경감 및 LPG 사용가구의 에너지가격 차별 해소를 위해 LPG 용기 검사비 전액 지원 및 보조 필요

○ LPG에 대한 인식제고 및 도시환경 보존을 위해 LPG 집단화단지 조성을 희망하는 시·군의 외곽 지역에 LPG 집단화단지 조성 추진 지원 및 사업비 보조 필요

* 예) 창원시에서 임대 중인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 LPG 집단화 단지」

4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업체 자금 지원

[건의 : 밀양하남기계소재공단사업협동조합 심상환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지정은 경남도정의 중요한 성과로서 국내 주물관련 소재산업에 새로운 방향 제시 및 활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했고, 지역경제에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의 단초가 되었음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 하남일반산업단지 투자 프로젝트 → 스마트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
- 2025년까지 3400억원 이상 직접투자 및 500여명 직접고용 신규창출 기대
- ☞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 복지 협력 등을 함께 도모하면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 노사민정 상생 기반 투자확대를 통해 경남지역 관련 산업계는 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90년대 이후 노후화된 생산설비 교체,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환경시설 완비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기업군으로 거듭날 것임
- 다만, 밀양상생형지역일자리 지정이 일회성의 선심성 정부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원 및 자금 등 추가지원이 필요함
- 현재 밀양하남일반산업단지 입주예정 업체 중 일부 소규모업체의 경우, 선정이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 자격조건 강화*에 따라 국가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설비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최소 신규 고용인원 및 설비투자비 증가, 입주시기 단축 등

□ 건의사항

- 밀양상생형일자리사업 선정업체의 기존 거래은행 대출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중장기 지원대책으로서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설비자금 지원 프로그램 또는 친환경 사업자를 위한 환경설비 투자지원 프로그램 등 개발 검토 요망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이휘웅 경남중소기업회장]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 을 통해 공동 구매·보관·물류·R&D·수출 등을 수행하는 네트워크 경제의 중추로,
 - 각종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제 선순환의 모델
 - 지자체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용을 통해 지원효과의 확산, 전파, 공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체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19.12.26)
 - * 조례제정 현황 : 광역지자체 16곳 (세종 제외)

□ 건의사항

-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도모를 위해 ‘활성화계획(기본계획)’ 조속 수립 및 예산지원 요청
 - 부산시(5.1, 지자체 중 최초 수립)에 이어 제주도(5.8)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 부산시 활성화계획 중 '21년도 주요 사업

- 협동조합 공통수요 지원사업의 경우, 중앙회 지역본부 위탁 통해 추진
 - ☞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 인큐베이팅 지원, 전문교육 확대 등 1.75억원 예산지원
- 지자체 육성산업 관련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에 직접지원
 - ☞ 뿌리산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기술고도화 (부산기계(조) / 25억원 / '19~'21)
 - 청년친화형 표면처리 선도단지 조성 (부산장림표면처리사업(조) / 20억원 / '20)

- 경남지역 협동조합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역 협업촉진센터 설치·운영,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협동조합 교육 및 인력양성, 협동조합 현대화 및 스마트화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요망

* 협동조합 활성화계획 마련 협의 중(경상남도 창업혁신과-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참 고

지자체별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협업촉진 센터 설치·운영	조합 컨설팅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교육·인력 양성지원	협업활성화 (거래지원)	조합간 협업화	네트워크 운영비 등	합 계
서울	20년	-	25	300	210	220	55	-	810
	21년								(미정)
경기 (경기 북부)	20년	-	120	165	-	10	-	5	300
	21년								(미정)
충남	20년	-	10	90	23	10	-	17	150
	21년								(미정)
충북	20년	-	-	8	30	2	-	10	50
	21년								(미정)
부산	20년	-	-	-	-	-	-	-	-
	21년	80	6	-	6	50	-	33	175
대구	20년	-	-	-	18	-	-	-	18
	21년								(미정)
광주	20년	-	-	-	-	-	-	30	30
	21년								(미정)
전북	20년	-	-	58	-	-	-	-	58
	21년								(미정)
제주	20년	-	10	-	10	-	-	10	30
	21년	-	10	20	10	-	10	10	60
합계	20년	-	165	621	291	242	55	72	1,446
	21년	80	16	20	16	50	10	43	235

* 20년 예산 미수립 지자체(8개) : 인천, 강원, 대전, 세종, 경북, 울산, 경남, 전남

6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건의 : 중소기업중앙회 이한욱 부회장]

□ 현황 및 문제점

-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상호부조정신에 따라 납부하는 공제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경영난 및 자금이 필요한 때 공제금을 지원하여 도산을 방지하는 제도임

* 법적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

- 현재 경상남도에서 공제기금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기금은 담보여력 부족, 신용등급 하락으로 제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보완재 역할을 수행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가입업체의 96.6%, 대출실적의 98.6%로 대다수 차지

- IMF 경제위기('97~'98년), 글로벌 금융위기('07~'08년) 기간에 시중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며 지원이 미비한 반면, 공제기금은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크게 기여

-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심각한 가운데 공제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년 이차보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 이차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코로나19' 로 인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현황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19년(2.1 ~ 6.30)	'20년(2.1 ~ 6.30)	증가율(%)
대출금액	1,838	2,038	11%

□ 건의사항

- 공제기금 지자체 이차보전 추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등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대 요망

- (현행) 100백만원 → (변경) 200백만원으로 확대

- '19년 이차보전 전체 예산 19.7억원에서 14.7억원 지원 (집행률 74.6%)
- 공제기금 전체 대출 중 이차보전 적용 대출 비중은 24.1%로 이차보전 혜택 미 적용 대출건수가 75.9% 차지
 - 수요가 많은 지역은 시행일로부터 한달 이내 예산 소진되어 지원이 필요한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못 받는 실정임

□ 지역별 이차보전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no	구 분	전체대출		이차보전 적용		건수대비 지원률	비 고
		건수	대출금*	건수	대출금		
1	서울	1,938	106,185	228	20,384	11.8	
2	부산	402	16,528	203	12,153	50.5	
3	대구	353	18,794	53	3,455	15.0	
4	인천	474	19,273	172	10,557	36.3	
5	광주	208	11,213	108	7,116	51.9	
6	대전	230	11,628	57	4,342	24.8	
7	울산	118	5,053	64	3,740	54.2	
8	세종	21	1,118	7	364	33.3	
9	경기	2,227	134,200	423	37,621	19.0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업체만 가능
10	강원	67	2,586	3	334	4.5	지자체와 건별협의
11	충천	55	2,074	4	202	7.3	지자체와 건별협의
12	원주	106	3,540	26	866	24.5	지자체와 건별협의
13	충북	281	15,211	121	8,933	43.1	
14	충남	145	8,083	52	4,361	35.9	
15	천안	99	5,279	66	4,516	66.7	
16	전북	312	11,531	96	4,665	30.8	
17	전남	143	8,875	86	6,691	60.1	
18	경북	366	17,498	56	3,455	15.3	
19	경남	440	20,610	90	5,010	20.5	
20	제주	123	5,326	36	2,064	29.3	
합 계		8,108	424,604	1,951	140,829	24.1	

* 대출실행액 기준 (제1호대출은 제외)

7

모래 사용제한 해제 건의

[건의 :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진종식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99개의 중소기업 회원사와 4,000여명의 종사자로 구성된 작지 않은 규모의 업체이나 레미콘의 주요 원자재인 골재 및 모래 사용에 있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레미콘의 주요 원자재인 모래는 영남권의 경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2008년부터 강모래 채취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기존 단가에서 2배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강릉, 김천, 영천, 구미, 남원에서 육상 골재를 구입·사용 중에 있음
 - 산림 골재 채취·가공에 따른 환경문제, 장거리 운반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및 유류·물류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른 대안으로 남해EEZ(배타적경제수역) 모래를 100% 의존해 사용(연간 600만㎥)했으나 이마저도 2017년 1월 채취가 일시 중단됐다가 2019년 이후 관수용에만 한정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건의사항

- 현재 관수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남해EEZ 바다 모래를 민수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제한 해제 요망
- 동남권 지역의 골재원 다변화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낙동강 유역과 지류 둔치 등에서의 모래 채취 허용에 대해 적극 검토 요망

[건의 : 마산어시장활어사업협동조합 박찬희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마산어시장은 상가 시설물이 낡고 협소하며 오폐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수가 마산만으로 유입되어 마산만 수질오염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상황임
-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내 소재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이전하게 됨에 따라 동 부지에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산1길 192 일원
- 내 용 :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 총사업비 : 약 80억원 (부지매입비 45억원, 건축비 35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이후

- 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마산만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젊음과 활력이 넘치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마산어시장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건의사항

- 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및 대출 지원
 - 저렴한 수협 부지 매입을 위한 경상남도의 행정 지원(공시가격)
 - 건물 신축시 자금 지원 : 수협을 통한 대출 지원
- 마산어시장을 건어물과 청과물 시장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유도

[건의 : 울산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장태권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인쇄수요 감소 및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인쇄물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음
- 中企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통해 中企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따라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음
 - 나아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및 수주기회 확대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6)하여 한시적('20년말)으로 수의계약 한도가 1억으로 상향하여 제도 활용폭 확대
 - 한도 상향으로 중기간경쟁제품 소품목*(5천만원~1억)에 대해 조달청에 구매요청 가능하여 감사부담 경감
 - *인쇄·광고물 세부품목 5천만원이하도 가능(20.2.1~)
- 그러나, 경상남도 및 산하 관련기관에서는 동 제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며 나라장터 일반입찰 계약 건보다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건에 대한 감사가 더 강화되고 있음

□ 건의사항

- 경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확대 및 협동조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경상남도 및 산하기관, 도내 각 시·군에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경남도청에서는 1천만원 이상 인쇄물에 대해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활용 중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는 정부의 엄격한 규정에 의해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최종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하고 있어 투명하고 바람직한 제도 이므로 도청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필요
- 인쇄물 계약시 인쇄원가계산에 의해 계약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개 요

-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와 조합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견적 경쟁만으로)으로 구매하는 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 주요내용

- 나라장터 또는 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상 업체 추천요청’, 소기업·소상공인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처리
 - (구매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 * 비상경제회의(4.8) 및 판로지원법령 개정(6월)으로 **한도 1억 확대** 한시적용(-20년말)
 - (추천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
 - (추천규모)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경우 2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경우 5개 이상의 소기업 / 소상공인을 추천(신청이 미달된 경우 3개 이상 추천)
 - (추천방식)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 선택 가능

□ 제도 및 구매대행 활용 시 장점

- 공공기관은 계약이행능력심사 없이 가격심사만으로 물품 구매 가능
-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인 협동조합에서 품질과 이행능력을 검증하여 추천하므로 구매담당자의 업무효율성 향상
- 조달청에서 구매대행 시, 구매담당자는 감사에 대한 부담 경감

[건의 : 울산경남기계공업협동조합 박성근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사, 용역 및 제조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사·용역과는 달리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 공동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이행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도급의 유형,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0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기계분야의 경우, 주요 제품이 하수처리장치, 공조, 무대장치 등으로서 제품 특성상 제조와 설치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적으로 계약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특허 및 공법회사가 거의 서울·경기 소재 회사여서 지역업체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임
- 수요기관의 담당자는 제조 물품에 대한 공동계약이 납품업체간 품질 차이 등으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공동계약 발주를 꺼림

□ 건의사항

-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기계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제조 물품 발주시 공동계약을 적극 활용을 요청

◇ 서면건의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16
2. 레미콘업계 노조 부당행위에 엄격한 법집행 요청 17
3. 작물보호제 조달입찰 기초단가 상향조정 18
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반 관련 규정준수 요청 19
5.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영업신고 관련 시·군 행정지도 20
6.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확대 21
7. 부정당제재 완화 22
8.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를 위한 지자체 시설 지원 23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건의 : 울산경남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천병태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70%가 직·간접적 피해, 소비심리 및 경제활동 위축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중심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등 피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저임금근로자 고용사업장의 임금을 보전 중이나, 인건비의 평균 10% 수준에 달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
-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이 있으나,
 - 동 사업은 신규/기존근로자의 지원수준이 차등화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기존근로자 고용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 어려움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근로자)
 -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30%(기존근로자) ~ 90%(신규근로자) 지원
 -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자 건강보험료 감면
 - 60%(20년 신규, 1~4인), 50%(20년 신규, 5~9인), 10%(19년 신규) 감면
- 추가로,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및 국민산재·고용보험 납부유예를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 지역가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생계부담 완화와는 별도로 사업장의 고용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이 별도로 필요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충격이 장기화될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일시적인 납부유예보다는 지원을 통한 부담 면제가 더욱 절실함
- 한편, 일부 지자체는 관내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분기별 신고 후 환급방식으로 사업주 부담 완화
 - * (강원도, 충청남도) 정부 지원액 제외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자체가 지원

□ 건의사항

- 소상공인 고용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한시 전액 지원
 - (현행) 고용보험료 최대 40%, 산재보험료 최대 60% 지원
- ⇒ (개선) 4대 보험료(고용/국민/건강/산재) 전액 지원

[건의 : 경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진종식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레미콘사들의 납품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이 특정노총에 가입한 자만을 고용토록 강요하여 건설현장마다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또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일방적인 인상 요구와 미수용시 파업 실행으로 인해 레미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노조에서 건설현장의 레미콘 발주 및 물량 배정에 개입하여 업체의 경영권 및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발전기금, 명절수당 및 운반비(10~20%)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장에 특정노총 가입자 및 장비 미사용시 레미콘 타설을 방해하여 적기공급에 차질을 발생시켜 납기지연 및 현장과 업체에 막대한 손실이 유발되고 있으며, 결국 최종소비자인 도민에게 피해가 전가됨

□ 건의사항

- 정부 차원에서 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개입하여 어려운 레미콘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해주시기 바람

3

작물보호제 조달입찰 기초단가 상향 조정

[건의 : 부산울산경남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김영철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광역시·도 및 시·군에서 실시하는 작물보호제 입찰 품목의 기초가격이 농협의 계통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중판매 단가와 큰 차이가 있어서 작물보호제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농협의 계통단가는 제조사에서 농협에 납품하는 단가로서 소상공인의 표시단가보다 10~20% 낮음
 - 농협에서는 중앙회 차원에서 각 지역에 필요한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입찰 또는 단가계약)함으로써 농자재 값을 낮추는 계통구매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이밖에 낙찰자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48호, 2018.11.8.)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적용되어 단가가 더욱 인하됨
 - * 낙찰율 : 5천만원 이하 - 87.99%, 5천만원초과 ~ 2억원미만 - 84.245%
 - 2억원 이상 - 80.495%
- 경남지역 작물보호제 소상공인의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한 기준단가 조정이 필요함

□ 건의사항

- 지역 작물보호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에서 작물보호제 구매를 위한 조달입찰 시행시, 구매 기초단가를 소상공인 표시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 요망

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반 관련 규정준수 요청

[건의 : 경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조현열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시 운송과 관련된 계약특이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시공업체 또는 공사감독관의 무리한 요구가 빈발하여 콘크리트 납품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계약체결)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 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옵션계약 품목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계약특이사항 내용 : 구매입찰공고서에 의하여 차상도(18톤 트럭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 까지 운송) 운송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음

- 공사용 원자재를 18톤 트럭이 진입 할 수 없는 공사 현장까지 도착 및 하차(크레인 사용)를 요구
- 공사현장까지 18트럭이 아닌 1톤 또는 5톤 트럭으로 운반을 요청하는 경우로 여러 번에 나눠서 운송함으로 운송비 과다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①운송비의 대폭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② 수요기관의 저렴한 제품, 시공사·감독관의 불리한 운송조건 요구로 인한 영세한 생산업체간 지나친 경쟁 유발(품질저하의 우려), ③동일 상황의 반복적 발생과 현재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콘크리트업계는 고사 직전임

□ 건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3항의 계약특이사항을 공사 감독관이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 요청
- 수요기관의 공사설계시 공사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예산책정 요망
- 시공업체 입찰시 운반조건을 명확히 하는 입찰공고 요망

[건의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한기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각 지역별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는 골목상권 보호·육성 및 유통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편의점, 식자재마트 등 유통 대기업으로 인해 조합원수가 감소하면서 물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
 - * 경상남도 : 창원, 진주, 거제지역 운영 중
-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의 한 축인 식당사업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품목을 공급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 더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게 공급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있음
-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득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거제시 및 진주시에서 물류센터를 영업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행정조치를 했으나,
 - 물류센터는 백화점, 수퍼마켓, 연쇄점 등과는 달리 비영리사업자이며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도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

□ 건의사항

- 경상남도에서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의 판매구조·대상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기초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요청함

[건의 :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황선호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산업표준화법」 제25조에 따라 KS 인증제품 및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 중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 (단체표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하여 민간 단체들이 제정하는 표준
- ** (우수 단체표준제품)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인증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국가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품질시험을 받아 합격한 단체표준제품
- 정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 12월)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9. 6월)을 통해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 경쟁 근거를 신설하여 구매를 촉진
- 그러나 아직까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의 우수단체표준 제품 및 상기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 저조

□ 건의사항

- 우수 단체표준제품 우선구매 제도 활용 적극 지원
 - 우수 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 제한경쟁·지명경쟁 적극 활용
 - 경상남도, 공공기관 등에 안내 및 활용 독려

[건의 : 경남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조현열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부진 지속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발생 및 장기화로 비상경제 상황
 - 특히, 위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 심각*, 심리도 크게 위축**
 - * 중소기업 2월 평균가동률 69.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 중소기업 4월 경기전망지수 60.6, '14.2월 초산업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매출 급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한계상황에 직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70.1%)은 ‘향후 6개월 못 버틴다’ 고 응답

※ 중소기업·소상공인 전국 순회 간담(3.19~25) 현장애로

(전시·행사대행업, 광고·인쇄업) 각종 행사 취소로 매출 급감, 매출 전혀없는 곳도 다수
 (급식업)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매출 전혀 없음
 (섬유·직물) 매출 50% 감소, 조업 단축 중
 (기계부품) 자동차·조선 기자재 산업 경기 악화로 물량 수주 애로, 매출 30% 감소

- 한편, 정부는 관련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운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이 실시하는 입찰 및 계약이행 등에 불성실한 자(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 동안 공공시장에 참여하는 길이 막혀 심각한 사업 차질 발생
 -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수요마저 끊긴 상황에서 공공입찰까지 제한되어 이중고(二重苦), 일반기업보다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 현장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입찰참가제한 조치되어 다소 과도하게 기업활동이 제한된다는 애로 호소
- 코로나19로 우리경제와 중소기업이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감안, 금융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사기 진작 필요

□ 건의사항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사안의 경우, 입찰제한 및 과징금 등 부정당제재 감면
 -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에 기여 가능

[건의 :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박준흠 이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20.3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는 267,594명이며,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올해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7,279명임
 - 금년도 E-9 외국인근로자 도입 예정 규모는 40,700명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4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이 잠정 중단되어 '20.6월말 기준 입국 대상자 19,118명(10,691개사) 중 2,003명(1,343개사)만 입국
 - 경남의 경우 1,041개사의 외국인근로자 1,958명 중 9.0%인 177명 입국
- 올해 6월 본회가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에 대한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1,062개사 중 52.3%인 556개사가 이미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
 -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인력 공백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 요구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에 따른 애로발생 현황>

(단위 : 개사, %)

구 분	응답업체	애로를 느낌	1~2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3~4개월 내 생산차질 우려	기타
전 국	1,062 (100.0)	556 (52.3)	241 (22.7)	141 (13.3)	124 (11.7)
부산, 울산, 경남	190 (100.0)	89 (46.9)	47 (24.7)	28 (14.7)	26 (13.7)

※ 출처 : 외국인력 숙식비 부담 및 입국지연 관련 애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6월)

□ 건의사항

-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의 71.4%*가 자가격리 시설 미비로 국가, 지자체의 격리시설 이용을 희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 애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5
-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도입을 통한 제조업 생산인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상남도의 격리시설 실비 이용 지원요청

※ 본회는 지역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입국 전후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협의 중